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연구

강 영 훈*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
- III. 제주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 IV.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
- V. 결 론

I. 문제제기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것은 1998년 새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부터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많은 반발과 저항이 생겨나면서 기능 전환의 관점으로 조정되었다. 기능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확대 등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계층을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문화·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은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활자치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제주시와 서귀포시의 31개동과 시범 실시지역인 구좌읍, 남원읍, 안덕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

1. 도입 및 추진실적

1) 도입 과정

주민자치센터는 계층 축소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많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다는 여건 때문에 기능과 인력만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자치센터는 “읍·면·동 폐지 후 주민자치센터 설치방침 → 읍·면·동 존치(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방침 →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 → 시범실시 평가 및 1단계 확대 실시 → 기능전환 2단계 시범실시 → 2단계 확대실시 → 전면 실시”의 과정을 거쳤다.

2) 추진실적

행정자치부는 2000년 7월부터 14시·군 31개 읍·면을 대상으로 2단계 기능전환

<표 1> 주민자치센터 도입과정

추진일정	내 용	비 고
98. 2	새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99. 2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정 시달	읍·면·동 제도 폐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99. 4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 변경, 읍·면·동제도 유지, 쇠퇴기능과 과다인력 정비, 여유시설·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99. 7~12	278개동 시범실시	94시·구 278개동
99. 11~12	시범실시 운영 종합평가	서면평가, 설문조사, 현지확인, 합동토론회 등
2000. 1~2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	준치사무·인력의 재조정 지역특성 반영한 보완대책 수립
2000. 3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 시달	도시지역 94시·구 1,655개동 확대시행
2000. 3	확대시행 준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및 인력조정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
2000. 7	확대시행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주민자치센터설치(시설 개·보수) 운영
2000. 7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시범읍·면 : 14시·군 31개 읍·면
2001. 3~5	2단계 시범실시 평가 및 보완	복합시 및 군지역
2001. 6	2단계 기능전환 추진지침 시달	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2001. 10	138시·군 1,858개읍·면·동 확대 시행	행정자치부 계획
2001년말 현재	1단계 주민자치센터는 96% 설치 2단계 주민자치센터는 9% 설치	1,654개동중 1,590개동 612개읍·면·동중 55개읍·면·동

시범을 확대하였다.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평가를 거친 후 2001년 6월에 「2단계 기능전환 추진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이후 2001년 10월부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이나 1단계 기능전환과 달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군 지역의 확대 실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은 여건이 미비한데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지역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보완점을 찾았다고는 하나 실제로 시범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국 34개의 지역경실련으로 구성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001년 3월 19일 「행정자치부는 읍·면 기능전환을 전면 연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2단계 기능전환 중 특히 농촌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연기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지역경실련협의회’는 3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행정자치부의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

시 현지확인 평가반'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도·농 복합시의 경우에는 결국 시행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농촌지역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능 전환의 경우 읍·면의 700여 업무 중 40~50%가 본 청으로 이관되어 일부 효율성을 거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건설·세정·소규모 민원·개발 사업·재해대처 등 주요 기능전환은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불편만 초래하여 2~3명이 본 청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 비례만으로 인력 감축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읍·면 지역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조건(고령화로 활용도 극히 저조, 자원봉사강사 구인난)이 절대 미비한 상태이다. 활용도가 극히 낮은 고가의 체력기구 구입비 등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현장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킬 것이다. 특히 농촌은 고령화 지역이어서 자동화·효율 행정보다 주민 곁에서 돌봐 주는 현장행정을 강조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주민자치센터 신설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인력 감축을 강행한다면 주민편의행정과 현장행정을 포기하고 행정편의만을 도모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표 2>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항 목	1단계 기능전환	2단계 기능전환
사무·인력조정 자치법규정비	94 개 전 시·구(100%)	138개시·군중 53시·군(38%)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94개시구중93개시구(99%)	138개시·군중 60시·군(44%)
주민자치위원회구성	1,654개동중1,610개동(97%)	612 개 읍·면·동 중 192개읍·면·동(31%)
주민자치센터설치	1,654개동중1,590개동(96%)	612 개 읍·면·동 중 55개읍·면·동(9%)

* 행정자치부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2001년 12월 현재 추진 실적)

2. 주민자치센터의 위상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은 사실 네 가지 시각이 혼재되어 있어 매우 불분명하다. 위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 및

주민들의 이해도 혼란스럽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1) 행정개혁론적 접근

지방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시킴으로써, 지방행정사무를 첨단화하고 행정인력의 배치 및 지방행정의 의사결정과정을 효율화하려는 접근방식이다.

읍·면·동사무소의 폐지와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인감증명제, 주민등록제 등) 혁신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완전한 형태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대체시키려던 읍·면·동 기능전환의 초기발상(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2. 5)을 반영한 접근방식이지만,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병존시키기로 한 정책전환(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 1999. 4. 7) 이후 그 강도는 약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는 접근방식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2) 주민자치론적 접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장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라는 현재의 명칭은 이 관점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명칭과는 달리,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 초기발상에서도, 읍·면·동사무소와 병존하는 것으로 한 정책전환 이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를 자치센터의 장 또는 읍·면·동장 등 행정공무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주민자치론적 접근방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이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대표성 및 자율성의 강화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위원들이 읍·면·동장에 의하여 위촉된다는 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에 대한 자문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의 주민자

치위원회'는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론적 접근방식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읍·면·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자연부락과 같은 지연공동체적 실체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실체적 한계 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론적 접근방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주민자치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현재의 조건 속에서, 특히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초점은 행정의존도가 높은 생활민원의 주민자치적 해결에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민원의 주민자치적 해결은, 정부적 해결방법이나 시장적 해결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3) 평생교육론적 접근

주민자치센터제도를 평생교육론적 관점에서 근거지우려는 접근방식은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추진 구조상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실제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방식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발상 속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일원화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생애학습도시'를 선언하여, 평생교육론적 관점에서 자치행정을 개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

평생교육의 개념은, 우리의 경우 교육자가 가르친다는 선입관에 따라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필요한 지식·정보·인간관계를 형성시켜나간다는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지역발전론적 관점에서도, 특히 정보화사회의 조류 속에서 개개인의 지식·정보 등과 같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유대 등과 같은 사회적

1) 후쿠오카시는 1999년 '생애학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민관과 각종의 문화·체육·복지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론적 접근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자치체계상, 주민자치센터는 조직상, 담당인력상 평생교육(생애학습)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교육행정체계와의 조화 문제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역복지론적 접근

평생교육론적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추진 구조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복지론적 접근방식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복지라는 개념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요 보호자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넘어서서 일반 주민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복지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제 기능을 고려할 때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역복지론적 접근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요 보호자를 넘어서서 일반 주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복지에 접근하는 경우, 각종의 문화, 여가, 사회,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역복지 프로그램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복지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시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일반적인 복지행정 및 복지전달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5) 통합적 접근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상 네 가지의

접근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혼재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의 기초 위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 자치행정체계와 교육행정체계, 복지행정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행정현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해서, 주민자치론적 접근, 평생교육론적 접근, 지역복지론적 접근이 혼재된 주민자치센터의 불분명한 위상이 여러 가지 실제적 곤란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접근방법을 혼합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제주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설치현황

제주지역 전체 총43개 읍·면·동 중 제주시 19개 동, 서귀포시 12개 동 등 총 3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12개 읍·면 지역에는 아직 전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 남원읍, 안덕면, 구좌읍은 2002년 6월 현재 시범 실시 중) 제주지역에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율은 79%이다.²⁾

<표 3> 전국 대비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제주도	제주시	19개 동	
	서귀포시	12개 동	
	읍·면	3개 지역 (시범실시지역)	9개 지역
전 국		1,675(1,600개 동, 75개 읍면)	591(102개 읍면, 489개 동)

자료 :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자치부, 2001. 12월 현재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함.

2)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1,423개 읍·면 중 75개 지역과 2,089 동 중 1,600 지역 등 전국적으로 총 1,675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읍·면·동 중 약 73.6%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2) 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급적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시 되도록 이면 인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와 사회진흥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하다.

제주지역에는 총 133개의 시설과 268개의 프로그램이 설치·개발·운영되고 있다. 이는 동 평균 4.3개의 시설과 약 8.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19개동에 79개의 시설과 173개의 프로그램이 설치·개발·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12개동에 54개의 시설과 95개의 프로그램이 설치·개발·운영되고 있다.

<표 4> 시설 및 프로그램 수

구 분	시설수(동평균)	프로그램 수(동평균)
제주시	79(4)	173(9)
서귀포시	54(5)	95(8)
총 계	133(4.3)	268(8.6)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50개로 18%,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35개로 13%, 주민편익 프로그램이 24%,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32개로 12%,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57개로 21%, 사회진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9개로 11%이다.

<표 5> 프로그램 시설 및 프로그램 유형

구 분	계	문화	복지	주민편익	사회교육	자치활동	사회진흥	기타
제주시	173	14	27	50	12	51	19	
서귀포시	95	36	8	15	20	6	10	
합 계	268	50	35	65	32	57	29	

자체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인기프로그램은 지역에 상관없이 댄스스포츠, 가요교실, 인터넷, 풍물 등 주로 문화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반면에 주민자치와 지역복지 같은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형성에 필요

한 프로그램은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 미진한 상태이다.

<표 6> 가장 선호하는 상위 3개 프로그램

구분	동명	프로그램명	이용주민수	강사유무	유·무상	
제주시	1위	이도2동	가요부르기	40	유	무상
	2위	삼도1동	댄스스포츠	30	유	무상
	3위	일도2동	인터넷교실	25	유	무상
서귀포시	1위	동홍동	댄스스포츠	1,200	유	무상
	2위	영천동	에어로빅	1,124	유	무상
	3위	서홍동	풍물교실	720	유	무상

3) 이용자 수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주민 수는 총 167,739명이다. 1일 평균적으로 2,000명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것이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670,956명이 된다.

남성(42.2%)보다는 여성(57.7%)의 이용률이 약 15%정도 높다. 주부 이용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남성의 순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고 노인이나 성인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이용주민 수 현황

구분	이용주민수 현황								
		성 별			이용대상별				
		이용주민수 (1일평균)	남	여	주부	청소년	어린이	노인	성인 남성
제주시	총계	135,092 (1,501)	56,368	78,724	63,493	28,625	9,577	22,860	10,537
	동평균	7,110 (79)	2,966	4,143	3,342	1,507	504	1,203	554
서귀포시	총계	32,647 (501)	14,492	17,955	8,290	5,798	7,862	5,751	4,946
	동평균	2,720 (41)	1,244	1,496	690	483	655	480	412
합계		167,739 (2,002)	70,860	96,679	71,783	34,423	17,439	28,611	15,483

4) 재원현황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구성은 시 50%, 도 20%, 국비 30% 이다.

<표 8> 시설비(시설 및 자산취득비)

구분	계(천원)	시비	도비	국비		
				소계	행자부	기타부처
제주시	1,314,000	638,000	238,000	438,000	238,000	200,000
서귀포시	652,000	344,500	154,000	154,000	154,000	-
계	1,966,500	982,500	392,000	592,000	392,000	200,000

반면에 운영비(강사의 수당, 시설물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는 시에서 약 76%를 부담하고 있다.

<표 9> 운영비(강사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구분	계(천원)	시비	도비	국비		
				소계	행자부	기타부처
제주시	842,100	647,100	95,000	100,000		100,000
서귀포시	240,000	180,000	60,000			
계	1,082,100	827,100	155,000	100,000		100,000

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인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이다. 읍·면·동장은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능단체 대표, 지역유지 등에 편중함이 없이 각계

각층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며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표 10> 직종별 구성 현황

구 분	직 종 별 구 성 현 황										
	총계	지방의원	회사원	자영업	주부	비영리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농축산업종사자	기타	
구성	제주시	396	17	18	67	53	80	7	24	86	46
	서귀포시	232	1	22	32	29	11	70	11	45	11

<표 10-1> 기타 구성 현황

구 분		계	사회사업가	종교인	언론인	의사·약사	공무원	무직
제주시	총계	43	4	2	4	2	20	11
서귀포시	총계	11	1	8		1		

<표 11> 분야별 구성분포

구 분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기타
제주시	총계	396	21	4	10	4	2	31	120	204
서귀포시	총계	232	12		15	11	8	2	35	149

<표 11-1> 기타

구 분		계	서비스업계	의약계	농축산업계	건설업계	부동산임대업	주부	무직
제주시	총계	204	30	2	86	16	3	53	11
서귀포시	총계	149	53	1	45	18	3	29	

<표 12> 지방의원 참여 현황

구 분	전체의원수	참여내역					미참여의원수
		계	위원장	위원	고문	기타	
제주시	17	17	3	2	12		0
서귀포시	10	1		1			9

6) 인력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의 동별로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고 있으나 이 인력으로는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표 13> 전담인력

구 분		인구수	주민자치센터 면적	시설/ 프로그램수	이용주민수 (1일평균)	전담인력
제주시	총계	283,044명	4,143평	79/173	135,092명 (1,501명)	19명
	동평균	14,897명	218평	4/9	7,110명 (79명)	1명
서귀포시	총계	85,768명	1,281평	54/95	32,647명 (501명)	12명
	동평균	7,147명	106평	5/8	2,720명 (41명)	1명

강사의 운용계획 또한 자원봉사자보다는 유급강사가 많아 예산상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표 14> 강사활용 현황

구 분	강사수 (1일평균)	활용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유급강사		기타	
				예산	자체수입금		
제주시	총계	4,050(45)	-	1,170(13)	2,880(32)	-	
	동평균	213(3)	-	61(1)	152(2)	-	
서귀포시	총계	1,711(29)	63	1,648	-	-	
	동평균	143(24)	5	138	-	-	

민간단체의 참여는 일부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고 적극적인 유관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현황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운영지원같은 부수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표 15> 민간단체 참여현황

구 분	계	유무상		활동내용별				
		유상	무상	자치센터 위탁운영	프로그램 일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견제출 협의 등 단순참여	기타
제주시		해당없음						
서귀포시	24				20	4		

<표 16>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구 분		자원봉사자수 (1일평균)	성별		활동분야별	
			남	여	강사	운영지원
제주시	총계	10,816(120)	5,575(62)	5,241(58)	4,050(45)	6,766(75)
	동평균	569(7)	293(4)	276(3)	213(3)	356(4)
서귀포시	총계	7,920(132)	5,148	2,772	1,711	6,209
	동평균	660(11)	224	96	143	577

계층별로 보면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와 직능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주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영업자이다.

<표 16-1> 계층별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구 분		자원봉사자수 (1일평균)	계층별								
			주부	회사원	자영 업자	전문가	직능 단체	민간 단체	학생	노인	기타
제주시	총계	10,816 (120)	967 (6)		518 (6)	4,050 (45)	2,081 (23)			1,710 (19)	1,890 (21)
	동평균	569 (7)	30		27	213 (2)	110 (2)			90 (1)	100 (1)
서귀포시	총계	7,920 (132)	189	255	391	725	4,438	872	88	899	63
	동평균	660 (11)	17	21	33	60	370	73	7	74	5

2. 문제점 진단

1) 도입상의 문제점

(1)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량 관련 문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인력배치 지침에 의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인력 조정으로 읍·면·동별로 업무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창구민원은 물론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읍·면·동의 기능 감축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 상급기관에 하달되는 업무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행정서비스의 부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화는 읍·면·동의 기능을 줄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민간위주의 행정체계 운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다. 하지만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은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운영비 지원 등의 또 다른 예산을 유발하고,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약한 주민들에게 자치적인 행정력 부여는 역부족이다.

첫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전담할 별도 부서 및 담당공무원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이다.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셋째, 전문성 미비 및 관료주의적 행정행태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전문적 문제제기나 조사분석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관료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사무조정상의 문제이다. 일부 존치사무의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이 본청과 동으로 분리 운영되는 등 주민불편이 내재되어 있다.

다섯째, 시행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이다. 중도에 방침이 철회되고 수정됨에 따라 사업취지가 약화되고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후속지침의 시달이 지연되는 등 자치단체 시책 추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 지방의원 활동과 중복문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설립되게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 활동이 지방의원의 활동영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의원들의 자치위원회 참여(자치위원장이나 간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의 일부인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을 주체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자치활동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지방의원이 자치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자치위원회 참여 제한은 타당성을 갖는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변단체화이다. 위촉된 위원들이 대부분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의 전 현직 임원들이거나 지역유지들이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자문위원회’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결여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부 지역유지로 구성되어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센터의 다수이용자인 여성과 주부와는 동떨어진 남성이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우리사회가 토호세력 중심의 감투사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유지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 되고자하는 것은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와 별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그 구성원들도 다수가 과거의 동정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도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모색하기보다는 동네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상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프로그램상의 문제

첫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주민자치의식 함양 같은 정신적 계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미흡하다. 주로 문화나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없고千篇일률적이며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한 문화여가시설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민간 사업자들과의 사업 중복문제이다. 사설독서실, PC방, 노래방, 헬스 등 민간부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시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근접성을 제외하고는 시설, 강사, 프로그램의 수준이 여타 사설기관보다 높지 않다. 이는 문화소비의 계층화 또는 계층별 단층화를 초래한다.

넷째, 관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 지향적인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주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인 실패이다. 행정인력 감축과 동사무소의 기능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이란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자율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시행 초기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기정착하기 위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강사의 수당, 공공요금, 각종 문화자료 교체 및 시설유지비 등의 기본경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나 운영비가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다른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운영상의 문제

(1) 자원봉사모집관련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전문강사가 없어 일반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부 프로그램을 순수 자원봉사강사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불가피하게 전문강사를 유료로 섭외하고 있다.

순수한 자원봉사 강사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활동을 그만둘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인식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선호하고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민간단체참여관련

실질적인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참여가 자칫 단체 자체의 운영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함에 따른 편향된 교육시설로 인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간단체가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활동영역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가 있고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도 현재의 자원봉사체계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홍보상의 문제

홍보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보나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정도로 그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대부분 민간부문에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 및 편의시설과 중복되고 있어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대한 신선함이 떨어진다.

IV.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1. 업무량 조정 및 전문성 확보

첫째, 동 존치사무 중 법령사무를 조속히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시·군별로 과 단위 이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담부서에는 지역별 프로그램 제안 혹은 강사 조달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담 실무자는 주민자율단체를 담당해보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과정이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담자격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담실무자가 기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합리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한다. 위원 선정시 전문성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활동과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을 중시한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선임권은 현재의 동장권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각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게 하여, 경력과 자질을 겸비한 지역 발전에 관심있는 인사를 선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위원과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단순히 듣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시행·점검·평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단순한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회비납부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3. 균형적 프로그램 개발

첫째, 각 자치단체 운영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지역별, 계층별, 대상별, 시기별로 유용한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자율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비물질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간의 정기적인 연찬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셋째,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우리동네 문화유적 답사와 지도 만들기,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하천기행, 마을놀이터 가꾸기, 한여름밤의 아파트영화제, 소년소녀가장 삼촌 되어주기, 무의탁노인 집수리 자원봉사, 주말환경농장, 녹색가게,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등이다.

넷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나 주민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목적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조사에는 지역의 물리적 자원(재정 및 인근의 다른 시설)과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시·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일회성·단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유형과 수준을 다양하게 개발하되 특히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진흥운동 및 주민자치활동 프

로그래를 적극 발굴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주민자치센터라는 물리적 공간 내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한다. 민간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는 그 내용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청소년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는 그 내용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발적·독립적 운영체제 구축

1) 수익자 위주의 사용료 징수

초기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하되 수준 높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적극적 자원봉사자 활용

전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실비 보상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전문강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질 높고 봉사정신의 투철한 강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준 높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여러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

하고 사전논의와 협조를 통해 질 높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생활이나 취미정도의 초급단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여성회관 혹은 복지회관 등은 고급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를 시도한다.

5.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과감히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은 최소한 1억원 이상, 도시지역은 7,000만원 이상을 시설비로 투자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투자 시에는 지역별 인구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재원은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익이나 회비, 기부금 등에 의한 운영을 준비해 나가겠지만 상당기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자치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과가 높은 센터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민 주도로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적인 활동에 필요한 자주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비, 사업수입, 행정업무 위탁수입, 임대수입, 수강료 등 재원 확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6. 구체적 홍보활동 전개

첫째, 홍보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설이나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공개제안, 자원봉사자의 공개모집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주민욕구설문조사, 명칭, 공간활용방안 등에 대한 공모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들로 마을신문 편집진을 구성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발간하게 한다. 행정은 이를 위한 정보제공, 인쇄, 배포 등의 후원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V. 결 론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활자치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 하겠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강력한 추진의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 구조조정 및 동행정 여건상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전담할 별도 부서 및 담당공무원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담 부서 및 인력 고정배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일부 존치사무의 경우 접수 및 처리기관이 본청과 동으로 분리 운영되는 등 주민 불편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 업무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 존치사무인 법령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관분야별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장이 위촉한 위원들 대부분이 관변단체나 직능단체의 전 현직 임원들이거나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제2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관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다. 주민들은 새로운 수동적 행정수혜자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행정인력 감축과 동사무소의 기능이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란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자율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 균형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일부 프로그램을 순수 자원봉사강사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불가피하게 유료전문강사를 섭외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강사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활동을 그만둘 수 있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선호하고 있

으므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책임있는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및 재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고 이용자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입재정의 지출이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가 많으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문제가 있다.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보나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대부분 민간부문과 중복되고 있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대한 신선함이 떨어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같이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지역주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일시적인 행정개혁으로 간주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망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순복(2001),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접근방안(I)(II)”, 자치행정, 5, 6권
- 김필두 외(1999),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석주·박기관(2002),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 안윤식(1998),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방행정연수원
- 오재일(1996), “읍·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임승빈(1997), “일본 지역사회에 있어 전통적 주민조직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 제주발전연구원(2002), 제주지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